

국 제 법

[강평 및 해설 : 김중일 교수]

총 평

2019년 9급 국가직 국제법 개론의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해 채감 난이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즉, 기존의 출제패턴과 문항별 배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처음 접하는 지문에 일부 수험생은 당황했으리라 추측된다.

영역별로 평가하면, 국제법의 기초이론인 강행규범 조항이외에는 출제가 볼륨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국가관할권 파트와 국가 관할 영역 부분이 분량 및 난이도의 중요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합 문항이 2개가 연거푸 출제되어 역시 ICC와 더불어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이 여지없이 출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WTO 경제법 파트의 문항은 분량과 수준은 적정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ICJ 조항 36조 2항의 조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은 세부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는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고 기본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의 묻는 차원에서 간접추출을 통해 학습의 내공을 요구하고 있어 고차방정식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주요 출제 빈도에 따른 경향성은 여지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 제하는 별 무리없이 소화했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험생활을 준비할 예비수험생은 학습의 단계를 수준별로 심화하여 조문과 판례의 적절한 배합과 더불어 폭넓은 학습방법을 선택하길 권유한다.

0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 ③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④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정답 2

해설

조약법 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는 무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효력 면에서 강행규범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국가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비엔나협약 제64조에서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국제법상 상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ICJ는 외교적 보호의 범주 내에서 개별 타국에 대한 의무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라 한다. 그 예시로 침략행위 금지, 집단살해 금지, 노예매매 금지, 인종차별 금지와 같은 인권 존중 의무 등을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대세적 의무에 대해서 강행규범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단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강행규범의 예로서 들 수는 있다.

02.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 ②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 ③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 ④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정답 1

해설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제한하는 시카고협약 제5조는 '각 계약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동협약의 비당사국은 제5조에 나타난 배타적 영공원칙의 제한을 거부할 자유가 있으므로 항공기의 무해통항권은 아직도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파리협약과 시카고협약에서도 '그 영역 상부 공간'이란 표현도 국가의 영공에는 상방한계가 없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지구 자전을 무시하는 불건전한 비역사적 결론이라는 논리의 모순에 의해 모든 국가는 미·소 양국의 기술적 우위에 굴복하여 자국 영토 위의 우주공간(외기권)에 대한 주권 내지는 관할권을 포기하게 된다.

1944년 시카고의 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제 1조에서 영공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였고, 이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선박과는 달리, 항공기는 민간항공기와 정부항공기를 불문하고 무해 통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선박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권국의 사전 허락 없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데 반해, 항공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항공기는 미리 협정 등을 통해 주권국의 허가를 구한 후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 협정을 맺으면 영공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공사에서 영공 통과료를 지불하고 있다.

어느 높이까지가 영공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국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주 공간은 국제적인 공간임이 확실한데, 문제는 어느 높이서부터 우주 공간이나 하는 것. 항공기의 최대 고도인 30km까지로 정하자는 안, 저궤도 인공위성의 일반적인 최저 고도인 160km 까지로 하자는 안 등이 여러 안이 제기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항공연맹(FAI)는 카르만 라인(Karman line)으로 알려진 100km 고도를 지구와 우주와의 경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준들은 국제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다.

0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③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④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형법의 일반원칙

로마규정은 형법의 일반원칙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문서이다. 행위 당시 문제의 행위가 ICC의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로마규정 하의 형사책임은 없다. 범죄의 정의는 엄격히 제시되어야 하며, 유추에 의하여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ICC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오직 로마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조약과 판례를 통해 수립된 로마규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하의 국가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포함하여 개인의 공적 자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를 로마규정 하의 형사책임으로부터 면하게 하지 않으며, 그 같은 공적 자격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경을 위한 근거로도 되지 않는다. '면제 및 특별절차규칙'은 ICC의 재판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

0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 ① 관세평가협정
- ②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③ 기술무역장벽협정
- ④ 정부조달협정

정답 4

WTO 협정 구조

부속서 1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과징금의 표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국영무역)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국제수지 목적 조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관세동맹 등)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Waiver 존속기간 설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주요 공급국 개념 확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양허안의 법적 효력 등)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선천적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 낙농 협정

국제 우육 협정

05.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
- ②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 ④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정답 3

해설

국가면제는 단지 타국의 집행관할권, 특히 사법절차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적·집행적 권한을 포함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 이는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 즉, 국내법 자체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면제는 단지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법적 차원에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호소하거나 국제법적 차원에서 자위권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

0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 ②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 ③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조약의 해석

1. 국제공동체에 일반강제관할권을 부여받은 재판소가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각 국가가 법규에 대한 자기해석의 원리에 귀결되곤 한다.

- 조약법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은 조약 규정의 해석을 위한 일단의 객관적인 원칙을 갖고 있지 못했다.

판례 : Free Zone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사건

PCIJ는 "의심이 있으면 주권의 제약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제한된 해석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있다.

기준 : 2006년 UN국제법 위원회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

도원칙"

'일방적 선언'의 경우, 그러한 선언에서 유래하는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례 : Ahmadou Sadio Diallo 사건

ICJ "국내법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내당국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국가가 자국 국내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재판소가 적절히 해석을 내리게 된다."라고 언급

2. 비엔나 협약 상 "신의 성실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즉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문언해석, 문맥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조약의 규범적 타당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 고려 대상

가. 조약의 해석 또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추후 합의나.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립하는 조약적용상의 추후관행

다. 당사자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규

3. 보충적 해석수단으로 준비문서와 조약체결의 사정을 예시한다.

4. 조약을 살아있는 문서로 보고 진화적 해석을 허용한다. 이를 ILC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 조약은 해석 당시의 객체 및 목적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아니면 관련 객체 및 목적은 조약 발효 후에 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07. 개인정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ㅂ

정답 3

해설

국제인권법이 발전되어서, 이제 개인은 한 국가 내에서 헌법과 다른 관련 법률 이외에도 국제인권법을 통한 이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제도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개인정보제도를 활용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로 제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처벌받은 손종규사건이 있다. 국제조약 중 핵심국제조약으로는 7대 조약이 꼽히고 있는데 유엔은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기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사회권규약위원회(ICEDCR)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방지위원회(CRC)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방지위원회(CEDAW)
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위원회(CAT Committee)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CR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센터)

0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 ④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정답 4

외교관의 임명

1. 임명

비엔나협약 상 외교관이라 함은 사절단장과 외교관 직급을 가진 외교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절단의 구성원(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지칭하며, 공관직원이라 함은 외교직원, 행정·기술직원 및 역무직원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려는 사람에 대해 먼저 접수국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받는 것으로 행해진다.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하는 경우 파견국에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기타 공관 직원과는 달리 육·해·공군의 무관의 경우에는 접수국은 아그레망이 아닌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①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②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09.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 ②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 ③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 ④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정답 2

해설

집행관할권

① 타국에 있는 어떤 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일국의 국내법상 입법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국의 허락 없이 그 영토 내에서 문제의 법을 집행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부당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실이다. 목적상 '집행'이라 함은 최종명령서의 발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환장 송달, 정보제출요구 등과 같은 모든 권력적 행위를 지칭한다.

- 국가의 입법 관할권이 합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면, 그에 기초한 국가의 집행 관할권은 그것이 역내이든 역외이든 불문하고 위

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국가들이 법의 역외집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 일국의 판결은 그것이 형사적·공법적인 것이 아닌 한 타국의 국내법재량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승인·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에는 관련국들 간에 이 같은 판결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일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법의 역외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 대상 국가는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증거수집에 관한 협력이나 판결의 승인·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현실적으로 외국기업들이 자국영토 내에서 자국 국내법상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를 하였는데도 미 정부나 미 회사들이 효과이론에 기초하여 독점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 영토 밖에서의 증거조사요구는 격심한 저항에 노출되곤 한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맞서 봉쇄법률로 불리는 대항입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1. 국가가 자국영토 내에서 일반 국제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집행관할권, 특히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제약받는 경우가 있다.
- 외국군대 지위협정, 영사재판은 일국 영토 안에서 외국정부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이 더욱 훼손되는 경우이다.
2. 이들이 영토국의 입법 관할권 그 자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집행 관할권의 측면에 있어서 속주주의가 배제될 따름이다.
- 그들은 영토국의 민법·형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발동 내지 재판권의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다.

10.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 ②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③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 ④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정답 3

해설

조약의 승계

1. 비엔나협약은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예에 따라 '국가들간'에 서면으로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국가와 국제법의 타주체간에 체결되는 조약과 구두로 체결되는 조약은 비엔나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떤 조약이 비엔나협약 적용의 결과로서 어떤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국가가 당해 조약에 담겨진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훼손되지 않는다.
2. 비엔나협약은 국제기구창설조약에도 적용되지만, 다만 이로 인하여 당해기구 회원국지위의 취득에 관한 규칙 혹은 당해 기구의 기타 관련 규칙은 침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은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이로 인하여 당해 기구의 기타 관련 규칙은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3.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에 부합되게, 특히 UN헌장에 규정된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게 발생하는 국가승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비엔나협약은 시간적으로 동협약 발효 후에 발생하는 국가승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이른바 이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임국가의 권리 또는 의무가 이전 조약의 대상이 된 관련조약의 타방당사국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승계국의 권리 또는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 국가승계가 발생한 경우 승계국의 참여를 예정하는 조항이 조약에 미리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

4. 처분적 조약

- '영토'에 대한 권리 혹은 의무를 다루는 조약, 즉 처분적 조약은 주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승계발생유형에 관계없이 승계국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가. 영토에 관련된 조약은 영토에 부착된 것으로서,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것을 만든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객관적 체제를 창설한다.
- 나. 영토에 관련된 권리/의무로는 국경선체제, 비무장지대, 통과, 항행, 어업을 비롯한 경제적 이용, 군사적 사용 등이 언급되고 있다.
- 다. 영토란 육지영토 뿐만 아니라 강, 호수 및 기타 비슷한 유형의 영토를 포함함
- 처분적 조약의 자동승계 원칙은 그 같은 조약의 효력이 영원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적 조약도 그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비엔나 협약은 처분적 조약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가. 국경선 관련 조약

- a.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선 그리고 국경선체제와 관련하여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권리·의무는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b.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국경선 신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 c.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국경선수립조약의 종료 및 탈퇴를 위한 근거로서 인용될 수 없다.
- d. 국경선 자동승계 원칙은 영토를 취득하는 국가는 그 영토의 경계도 자동 승계한다는 더 넓은 원칙의 일부이다.
- e. ICJ는 *uti possidetis* 원칙과 민족자결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해석

- f. 그러나 *uti possidetis* 상태 역시 불변의 것은 아니다. 즉, "재판이나 조약에 의해", 혹은 "목인이나 승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g. *uti possidetis*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에서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례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사건

ICJ는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인구압박이거나 천연자원의 불평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5. 비처분적 조약

- 비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승계 발생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 영토 일부의 이전
- 할양, 시효 등의 사유로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가 타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승계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만 이른바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에 따라 다음 두 규칙이 적용된다.
- 가. 승계 시에 발효 중이던 전임국가의 조약들은 상실한 영토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 나. 승계 시에 발효 중이던 승계국의 조약들은 새로이 취득한 영토에까지 연장 적용된다.
- 신생독립국
- 가. 해외영토 내지는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획득한 신생독립국은 전임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장애물로부터도, 특히 식민지에 관련된 그 어떤 조약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주권을 획득한다는 백지출발주의가 있다.

나. 신생독립국의 조약승계방식

- a. 신생독립국은 조약승계의 취지를 문제된 조약의 기탁소에 '통고'함으로써 전임국가가 체결해 놓은 식민지관련 '다자' 조약을 승계할 '수' 있다.
- 다만, 예외는 신생독립국의 다자조약승계가 조약의 객체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승계로 인하여 조약운용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생독립국은 그 같은 다자조약을 승계할 수 없다.
- b. 전임국가가 타국가와 체결해 놓은 식민지 관련 '양자' 조약을 신생독립국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신생독립국과 그 타국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국가들의 통합

13.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 당사국 상호 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발생 시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 ② 규정 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 ③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 ④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 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정답 3

해설

구체적으로 관할권이 성립하는 근거는 ICJ 규정 제36조에 제시되어 있다.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36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2항에 따라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있는 경우이다. 1항의 '동의'는 대체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의 체결, 그리고 특정 조약 내 재판조항의 삽입으로 이루어진다.

36조 2항의 내용은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즉 위에 열거된 내용의 분쟁에 대해 국가가 ICJ의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데 36조 2항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 ①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 ②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 ③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 ④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정답 2

해설

각 회원국은 최고 5명까지 대표를 둘 수 있지만 의안표결에는 1국1표주의가 고수된다. 실질문제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과반수 내지 2/3 투표로 의사가 결정되며 절차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심의·의결·감독·재정 기능을 통하여 총회는 국제연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연합헌장 제10조로부터 제14조까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제10조에 따르면 "총회는 헌장이 다루고 있는 영역과 헌장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구들의 권한에 관하여 심의와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총회는 감독기능의 측면에서 경제·사회 기구들을 규제하고 비(非)자치지역 문제를 관장한다.

제 17 조

1.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 ②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탈퇴

UN헌장은 '탈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근거는 LN과 달리 탈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UN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그 자체가 당해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정'에는 UN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례로는 1965년 인도네시아, 즉, 말레이시아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수락되었다.

제 88 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발전에 질문서를 작성하며, 또한 총회의 권능 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 지역의 시정권자는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연례보고를 행한다.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직면하여 그 정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할 따름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침략행위를 한 국가(제39조)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국가(제94조)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개별국가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제26조). 절차상의 문제가 9개국(1965년까지 7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실질적인 문제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지속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하고 있고 보조기관으로 군사참모위원회, 군축위원회, 26개국 제네바 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16.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 ②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 ③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정답 3

해설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 ②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 ③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 ④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정답 1

해설

심해저의 법적 지위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심해저와 그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18.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 ②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 ④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1. 보조금이란 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로 인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게 '혜택(Benefit)'이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
2. WTO 보조금 협정 제1조에서는 "재정적 기여"를 첫째, 직접적 자금의 이전(대출, 무상지원 및 지분 출자 등) 및 잠재적 채무의 부담(지급 보증 등), 둘째, 정부의 세입의 포기(세액 공제 등), 셋

째, 일반적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넷째, 상품 등의 구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민간 기관일지라도 재정적 기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간 기관에 의한 공여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위임 또는 지배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일지라도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교부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과 EU 간의 대형민간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3. 협정에서 말하는 "혜택"(Benefit)이란, WTO 보조금 협정 제14조에서 구체적인 의미와 계산 방법을 알 수 있다. WTO 보조금 협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혜택으로 보고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지분 출자의 경우 국내의 민간투자자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 포함)과 불일치 하는 경우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둘째, 정부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고,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셋째, 대출보증의 경우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되며, 넷째,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의 경우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 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면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상의 적절성은 국내의 지배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4. 국가와 공공기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 개념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금액 및 상계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면 정상적 시장에서의 비교 가능 대상을 찾아 두 금액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개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개념이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각각의 경우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비교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관례로 일반적으로는 비교 대상은 시장 이자율, 채권 수익률 등 넓은 관점에서 선정되고 있다.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 ②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 ③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와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목적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1. 외교면제는 오로지 접수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공정행위에 대한 외교면제 계속의 원칙도 '대세적' 효력, 즉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3. 비엔나협약은 단지 외교관이 제3국을 통과 중이거나 혹은 불가항력으로 제3국에 들어갈 경우 통과외교관에 한해 일정 면제를 부과할 의무를 제3국에 지우고 있다. 제3국은 통과 중인 외교관에게 단지 "불가침성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다.

4. ‘통과 중인’ 외교관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 특정한 접수국에 파견된 외교관

나. 통과와 목적이 ‘부임을 위한’ 것이거나, ‘임지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통과 중인 외교관은 세관검사와 같은 ‘특권’은 전혀 향유하지 못한다.

20. 국제연합(UN) 헌장 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 제 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 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③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1

해설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